제307회 임시회
2012. 3. 5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2년 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4일

3. 제안이유

○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-3782(2011. 10. 28)호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「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위원의 추가위촉 민간위원 참여 확대 (안 제2조)

- 전체 위원수 9명 → 11명(민간위원 5명 → 7명)

○ 심사기준 신설 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○ 동 조례안은 2011. 7. 29. 개정되어 10. 30.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

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○ 현행 5명이던 민간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하여 전체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였고(안 제2조),

○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(안 제4조),

○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일부 조정(안 제7조)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○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, 안 제3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